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10 선고 2021나6919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---

### 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10 선고 2021나6919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8 선고 2021가단14135 판결

#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2. 5. 13.

판결선고 2022. 6. 10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8. 선고 2021가단14135 판결

#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대 287.5㎡ 중 287.5분의 27.37 지분에 관한 2009. 7. 23.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라는 판결을 원인으로 2009. 8. 27. 제66481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.

## 이 유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석준협, 판사 권양희, 판사 주채광